

[2020학년도 고3 9월 모의평가 27~31번]

[지문 분석 : 병렬적 구성 + Q/A]

1문단

① 물건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그 물건의 주인일까? ② 점유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 상태를 뜻한다. ③ 이에 비해 소유란 어떤 물건을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상태라고 정의된다. ④ 따라서 점유자와 소유자가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다.

① <물건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 그 물건의 주인일까?

-> 질문으로 시작하네요. 즉 Q/A 구조가 될 가능성이 높겠죠.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러한 질문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에 대한 답이 제시되는 흐름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즉 '물건을 사용하는 사람'과 '물건의 주인'이 일치하는가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거죠. 따라서 다음 문장부터는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구체화하기 위한 흐름으로 진행될 것이고, 결국 A : '일치한다 or 일치하지 않는다'와 같은 답이 제시되겠죠.

\*Point[소재 -> 구체화된 화제의 제시 / Q/A]

② 점유란 /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 상태>를 / 뜻한다.

③ 이에 비해 / 소유란 / [<어떤 물건을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상태라고 / 정의된다.

-> ②~③은 ①에 대한 답을 제시하기 위한 선행 개념이 세팅되는 구간이죠. 여러분들은 ②를 읽어가면서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명시적인 지시어, 접속어가 없으니까요. 따라서 여러분들은 '물건'이라는 '동치어의 반복'을 통해서 ②를 ①과 연결하고, 이러한 선행 개념 세팅의 흐름이라는 층위를 파악하고 읽었어야 합니다.

또한 ③을 읽어가면 '이에 비해'라는 접속어에 반응하고, '병렬항 -> 비교'를 통해 공통 서술 범주에 해당하는 정보들을 남겨놔야 합니다. 결국 ③역시도 ②와 같은 층위의 문장에 해당하겠죠.

[A를 위한 선행 개념 세팅 구간]

1) 점유 =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 상태

2) 소유 = 어떤 물건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상태

-> 그래서 각각 '점유'와 '소유'가 되겠네요. 이와 같이 새로운 개념이 제시될 때는 반드시 그 개념의 워딩 자체를 납득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짚어주고 넘어가도록 합니다.

-> 또한 해당 개념들을 읽고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러한 두 개념이 ①에 제시된 Q와 어떤 관련일까?'와 같은 생각을 해줬다면 '물건을 사용 = 점유 / 물건의 주인 = 소유'와 같이 '문맥상의 동치어'를 파악하고 넘어갈 수 있었겠죠.

\*Point[액자식 구성 -> 선행 개념 세팅 / 문장의 층위 파악]

\*Point[공통 서술 범주를 중심으로 한 병렬항의 비교]

\*Point[워딩 짚기]

④ 따라서 점유자와 소유자가 / 항상 / 일치하지는 않는다.

-> 민감하게 반응했어야 합니다. ①에서 Q를 던지고 ②~③에서 세팅한 선행 개념들을 바탕으로 A를 제시하고 있는 문장이니까요.

-> '따라서'의 의미를 납득해보면, 결국 '점유'와 '소유'는 차이가 있는 개념

이기에 '물건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 = 점유자'와 '그 물건의 주인 = 소유자'가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납득.

-> 해당 부분까지 읽고 흐름을 남긴다면 아래와 같습니다.

1) Q : 물건을 사용하는 사람이 -> 물건이 주인인가

2) 점유와 소유의 개념 세팅

3) A : 물건의 점유자와 소유자가 항상 일치하지는 않음

-> 1문단까지만 읽고는 정확하게 '하나의 구체화된 화제'를 파악하기는 힘듭니다. 서술의 흐름 자체가 명확히 하나의 화제를 제시하기 보단 '중심소재'와 '1문단에서의 세부 화제'를 제시한 느낌이 크기 때문이죠.

이와 같이 요즘 평가원 지문은 '하나의 구체화된 화제 -> 지문 전체를 통한 구체화'와 같은 정형화된 형식보다는 '중심 소재 -> 각 문단 별 세부 화제의 전환'과 같은 흐름으로 불친절한 형식으로 서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하나의 구체화된 화제'가 보이지 않는다면 중심 소재를 바탕으로 각 문단에서의 세부 화제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읽어 가면 됩니다.

\*Point[중심 소재 -> 문단 별 세부 화제의 제시 및 전환]

1문단 Point 정리

① [중심 소재 -> 구체화된 화제 / Q/A]

② 명시적이지 않은 문장의 연결 -> 동치어의 반복

③ [액자식 구성 : 선행 개념의 세팅 / 문장의 층위 파악 및 범주화]

④ 병렬항의 비교

2문단

① 물건을 빌려 쓰거나 보관하고 있는 것을 포함하여 물건을 물리적으로 지배하는 상태를 직접점유라고 한다. ② 이에 비해 어떤 물건을 빌려 쓰거나 보관하는 사람에게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도 사실상의 지배를 한다고 볼 수 있다. ③ 이와 같이 반환청구권을 가진 상태를 간접점유라고 한다. ④ 직접점유와 간접점유는 모두 점유에 해당한다. ⑤ 점유는 소유자를 공시하는 기능도 수행한다. ⑥ 공시란 물건에 대해 누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려 주는 것이다. ⑦ 물건 중에서 피아노, 금반지, 가방 등과 같은 대부분의 동산은 점유에 의해 소유권이 공시된다.

① [<물건을 빌려 쓰>거나 <보관하고 있는> 것을 포함하여 / 물건을 물리적으로 지배하는] 상태를 / 직접점유라고 한다.

-> '물건', '점유'와 같은 '동치어의 반복'을 통해서 1문단에서의 중심 소재를 끌어와서 연결해서 읽었어야 합니다.

\*Point[동치어의 반복 -> 세부 화제의 전환]

② 이에 비해 <어떤 물건을 빌려 쓰거나 보관하는 사람에게 /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도 / 사실상의 지배를 한다고 / 볼 수 있다.

③ 이와 같이 <반환청구권을 가진> 상태를 / 간접점유라고 한다.

-> '이에 비해'를 통해서 ①과 ②를 같은 층위의 정보로 비교하면서 연결해 주고, '이와 같이'를 통해서 ②와 ③을 연결해서 읽었으면 됩니다.

결국 정리하면 2문단에서는 1문단에서 제시된 '점유'라는 키워드를 바탕으로 수능 국어의 새로운 기준 김민수

로 '직접 점유'와 '간접 점유'를 병렬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흐름이죠.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러한 세부 화제의 전환의 흐름을 파악하고, 제시되는 두 개념을 명확하게 비교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점유**

- 직접 점유 : 물건을 물리적으로 지배하는 상태

ex) 빌려 씀, 보관

- 간접 점유 : 반환청구권을 가진 상태

ex) 직접 점유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Point[공통 서술 범주를 중심으로 한 병렬항의 비교]

④ <직접점유>와 <간접점유>는 / 모두 / 점유에 / 해당한다.

-> ①~③에서 제시된 '직, 간접점유'가 모두 '점유'에 해당한다는 거죠. 굳이 해당 문장을 말한 이유는 '직접점유뿐만 아니라 간접점유도 점유에 해당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필자의 의도로 볼 수 있겠죠.

⑤ 점유는 / <소유자를 공시하는> 기능도 수행한다.

-> '점유 -> 소유자를 공시하는 기능도 수행'이라는 거죠. ④와 잘 연결해서 읽었다면 앞서 제시된 '간접점유, 직접점유'가 모두 이러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읽고 내용을 범주화를 하면, 아마도 해당 문장이 2문단에서 제시하고 싶었던 중요한 정보가 되겠죠. 그리고 이를 위해서 앞서 제시된 ①~⑤에 걸쳐서 '간접점유 & 직접점유 -> 모두 점유에 해당 -> 점유는 소유자를 공시하는 기능을 함'과 같은 흐름으로 서술한 거겠죠.

⑥ 공시란 / <물건에 대해 / 누가 /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를 / 알려 주는> 것이다.

-> ⑤에서 제시된 '공시'에 대해 개념을 세팅하는 문장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⑥을 읽고 ⑦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정의된 개념을 바탕으로 ⑤를 다시 읽고 내용을 채우고 가야 합니다. 그랬다면 결국 '점유 -> 소유자를 공시하는 기능도 수행 -> '물건에 대한 소유자의 권리, 즉 소유권' 알려주는 기능을 수행'과 같은 생각을 할 수 있었겠죠.

\*Point[개념 세팅 구간 -> 문장의 층위 파악]

⑦ 물건 중에서 <피아노, 금반지, 가방 등과 같은> 대부분의 동산은 / 점유에 의해 소유권이 공시된다.

-> ⑥에서 제시된 '공시'의 개념을 바탕으로 '점유 -> 소유자를 공시 -> 대부분의 동산은 점유에 의해 소유권이 공시'를 제시하는 흐름인 거죠. 어려운 내용은 없었습니다.

-> 여기까지 읽고 2문단의 흐름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직접점유와 간접점유 -> 모두 '점유'에 해당

2) 1)과 같은 '점유'는 '소유자를 공시 -> 대부분의 동산의 소유권 공시'

-> 2문단까지 읽고 나서도 불편합니다. 당연합니다. 1~2문단이 '점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는 있지만, 세부적인 화제에서 전환이 있었기 때문이죠. 따라서 여러분들은 '점유'를 바탕으로 1,2문단을 연결하되, 각 문단의 세부 화제들 정도만 크게 남기고 넘어갔으면 됩니다.

1문단 : 소유자와 점유자가 항상 일치하지는 않음

2문단 : 직접점유와 간접점유는 -> 동산의 소유권을 공시하는 기능도 수행

\*Point[문단별 세부 화제의 전환]

**2문단 Point 정리**

- ① [중심 소재 -> 세부 화제의 전환 / 동치어의 반복]
- ② 공통 서술 범주를 중심으로 한 병렬항의 비교
- ③ [액자식 구성 : 선행 개념의 세팅 / 문장의 층위 파악 및 범주화]

**3문단**

① 물건의 소유권이 양도되려면, 소유자가 양도인이 되어 양수인과 유효한 양도 계약을 하고 이에 더하여 소유권 양도를 공시해야 한다. ②점유로 소유권이 공시되는 동산의 소유권 양도는 점유를 넘겨주는 점유 인도로 공시된다. ③양수인이 간접점유를 하여 소유권이 이전이 공시되는 경우로서 '점유개정'과 '반환청구권 양도'가 있다. ④예를 들어 A가 B에게 피아노의 소유권을 양도하기로 계약하되 사흘간 빌려 쓰는 것으로 합의한 경우, B는 A에게 피아노를 사흘 후 돌려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된다. ⑤이처럼 양도인이 직접점유를 유지하지만, 양수인에게 점유 인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를 점유개정이라고 한다. ⑥한편 C가 자신이 소유한 가방을 D에게 맡겨 두어 이에 대한 반환 청구권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 가방의 소유권을 E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자. ⑦이때 C가 D에게 통지하여 가방 주인이 바뀌었으니 가방을 E에게 반환하라고 알려 주면 D가 보관 중인 가방에 대한 반환청구권은 C로부터 E에게로 넘어간다. ⑦이 경우를 반환청구권 양도라고 한다.

① 물건의 소유권이 양도되려면, //

소유자가 / 양도인이 되어 /  
(소유자가) 양수인과 유효한 양도 계약을 하고 /  
이에 더하여 소유권 양도를 공시해야 한다.

-> 3문단 역시 앞 문단과 편하게 연결되는 흐름이 아닙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애초에 해당 지문이 하나의 화제를 구체화해나가는 흐름이 아니라 '소유, 점유 -> 소유권 양도'와 중심 소재를 바탕으로 각 문단 별로 세부 화제가 전환되는 흐름이니까요.

①을 읽으면서 '물건의 소유권'이라는 동치어의 반복을 통해 1~2문단과 연결해서 읽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중심 소재를 바탕으로 새로운 세부 화제가 제시되고 있다는 것을 파악했어야 합니다.

- 물건의 소유권 양도

- 1) 소유자가 양도인이 되어야 함
- 2) 소유자가 양수인과 유효한 양도 계약을 해야 함
- 3) 소유권 양도를 공시해야 함

-> 3문단에서는 이러한 '물건의 소유권 양도'라는 논의 범주에 대해서 구체화할 가능성이 높겠죠. 따라서 여러분 역시 '앞 문단까지는 물건의 소유권과 점유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이제부터는 그러한 소유권을 양도하는 것이 화제가 되겠다.'와 같이 '논의 범주'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Point[문단별 세부 화제의 전환 -> 논의 범주의 파악]

\*Point[조건 발문 -> 민감하게 반응 / ex) ~하기 위해, ~하려면]

-> 해당 문장을 처리하기 위한 실질적 행동 요령 중 중요했던 것 '~하려면 ~ 해야 한다'와 같이 '조건' 발문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러한 조건들을 '개별적'으로 분절해서 인식하는 것입니다.

평가원은 이와 같이 '조건 -> 결과'와 같은 내용을 서술했을 때, 그러한 각 조건들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구체화하거나, 선지로 구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 2016학년도 변론술 지문, 2015학년도 유비비중 지문) 따라서 그러한 기출에 대한 답습이 되어 있었다면 해당 문장에서도 위에 도식화한 것과 같이 정확하게 '조건'들을 분절해서 인식했어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 문  
수능 국어의 새로운 기준 김민수

제가 있었다면 4문단을 읽으면서 3문단과의 관계성을 파악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큼니다. 따라서 4문단이 3문단과 대조되는 내용이라는 것을 파악하지 못했다면 해당 부분에서 문제가 있지 않았는지 돌아볼 수 있도록 합니다.

② <점유로 / 소유권이 공시되는> 동산의 소유권 양도는 / <점유를 넘겨주는> 점유 인도로 / 공시된다.

-> 해당 문장을 정확하게 분절해서 읽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역시나 '관형절'의 처리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해당 문단에서는 해당 문장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해당 문장에서 '논의 범주'를 정확하게 확정하지 못하고, 다음 문장으로 넘어갔다면 '내용 자체는 이해되는데, 이런 내용을 왜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와 같은 생각이 들었을 거니까요.

1) 동산은 점유로 소유권이 공시 됨

-> 위와 같이 명확하게 하나의 정보가 들어왔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은 2문단에서 이미 서술된 내용이므로 '맞네. 2문단에서 동산은 점유로 소유권이 공시된다고 했지. 그 내용이구나'와 같이 납득할 수 있었어야 합니다.

2) 1)과 같은 '동산의 '소유권 양도'는' -> '점유를 넘겨주는 = 점유 인도'로 공시 됨

-> 우선 해당 부분까지 읽고 '소유권 양도 -> 동산의 소유권 양도'와 같은 논의 범주가 명확하게 파악되었어야 합니다. 그랬어야 '동산의 소유권 양도 -> 점유 인도를 통해 공시됨'과 같은 개념간의 관계가 처리되었을 거니까요.

또한 이를 바탕으로 해당 문장을 정확하게 납득했다면 '점유 인도를 통해 공시'됨을 통해 해당 문장부터 결국 ①에서 말했던 조건 중 3번째 조건인 '소유인의 양도를 공시'하는 것을 구체화하고 있다는 흐름을 파악할 수 있었겠죠.

-> 즉 정리하면 '물건의 소유권 양도 -> 양수자의 소유권이 공시되어야 함 -> 동산의 경우 '점유를 넘겨주는 = 점유 인도'를 통해 그러한 소유권이 공시될 수 있음'과 같은 흐름이 되겠죠.

아마 다음 문장, 다음 문단의 내용이 어려웠다면 분명 해당 문장에서 이러한 흐름을 잡지 못하고 넘어갔을 가능성이 큼니다. 그 이유는 '명시적인 문장의 연결'이 아닌 '동치어의 반복'을 통해 문장들을 나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관계성을 파악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이죠. 따라서 여러분 중 해당 문단부터 내용 파악이 어려웠다면 해당 문장을 정확하게 처리하고, 위와 같은 흐름을 잡아줬는지에 대해서 고민해보도록 합니다.

- \*Point[명시적 연결 고리가 없는 문장의 연결 -> 동치어의 반복]
- \*Point[문단별 세부 화제의 전환 -> 논의 범주의 파악]
- \*Point[관형절 -> 분절적 정보 처리 / 선지 빈출 정보, 개념의 정의]

③ <양수인이 / 간접점유를 하여 // 소유권 이전이 공시되는> 경우로서 / <'점유개정'>과 <'반환청구권 양도'>가 있다.

-> '간접점유, 소유권 이전이 공시'와 같은 동치어의 반복을 통해 연결해갔으면 됩니다. 다만 ③의 흐름을 잡기 위해서는 ②에서 앞선 흐름을 잡고 있어야만 합니다. 즉

'물건의 소유권의 양도 -> 양수인의 소유권을 공시해야 함 -> 동산에서는 '점유'를 통해 소유권을 공시할 수 있음 -> 점유(직접 + 간접점유) 중 '간접점유'를 하여 소유권 이전이 공시되는 경우 -> 1)점유개정, 2)반환청구권 양도'

과 같은 흐름으로 구체화되어 가고 있는 흐름이죠. 따라서 다음 문장부터는 '1)점유개정 구체화 -> 2)반환청구권 양도 구체화'와 같은 흐름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겠죠.

- \*Point[명시적 연결 고리가 없는 문장의 연결 -> 동치어의 반복]
- \*Point[병렬항의 개별적 인식]

④ 예를 들어

A가 / B에게 / 피아노의 소유권을 양도하기로 계약하되 // 사흘간 빌려 쓰는 것으로 합의한 경우, //

B는 / A에게 / <피아노를 / 사흘 후 돌려 달라고 / 요구할 수 있는> 반환청구권을 / 가지게 된다.

⑤ 이처럼 [<양도인이 / 직접점유를 유지하지만, // 양수인에게 점유 인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를 / 점유개정이라고 한다.

-> ④~⑤는 결국 ③에 묶이는 정보죠. 즉 3)에서 제시한 '간접점유로 소유권 이전이 공시되는 경우 -> 1)점유개정, 2)반환청구권 양도' 중 '1)점유개정'을 '예시'를 통해서 구체화하는 흐름이겠죠.

따라서 여러분은 ④~⑤와 같은 '구체화된 사례'를 읽어가면서 ③에 제시된 '일반화된 진술'을 적용하면서 읽었어야 합니다. 늘 말하지만 '예시'를 '일반화된 진술'과 연결해서 읽어줘야 명확하게 이해가 되고, 정보량 부담이 줄어듭니다.

- '1)점유 개정'의 예시

- A = 양도인 = 거래 전 소유자, 직접 점유자
- B = 양수인 = 거래 후 소유자, 간접 점유자

1) A가 B에게 피아노의 소유권을 양도하기로 계약하되 + (A가) 사흘간 빌려 쓰는 것으로 합의한 경우

-> '물건의 소유권 양도'라는 논의 범주에 해당하는 예시라는 거죠. 또한 '사흘간 빌려 쓰는 것으로 합의'를 읽으면서 '누가 빌려 쓰는 거지?'와 같은 의문을 통해 '빌려 쓰는' 주체를 확정했어야 합니다. 즉 A가 소유권을 B에게 넘기기로 하되, 사흘만 A가 빌려 쓰기로 합의한 경우라는 거죠.

2) B는 A에게 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됨

-> 당연한 거죠. A가 소유권을 B에게 넘기고, 그걸 빌려 쓰는 것이므로 사흘 뒤에 B는 A에게 피아노를 달라고 요구할 수 있죠. 그리고 그게 '반환청구권'이 되겠네요. 워딩은 짚어주세요. 납득.

3) 점유개정 = '양도인이 직접점유를 유지 + 양수인에게 점유인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

-> '이처럼'을 통해서 ⑤가 ④의 내용을 요약, 정리한다는 것을 파악하고, ④의 내용을 ⑤에 넣어서 읽었어야 합니다. 즉

'양도인이 직접 점유를 유지'

-> 양도인 'A'가 양수인 'B'에게 소유권은 이전했지만, 사흘간 빌려 쓰기로 했으므로 '물리적인 지배 = 직접점유'는 A가 하고 있는 것.

'양수인에게 점유인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

-> 직접점유는 A가 하고 있지만 '반환청구권 = 간접점유의 인도', 즉 점유 인도를 통해 소유권이 B에게 넘어간 것. 이러한 상황을 바로 '점유개정'이라고 한다는 거죠. 즉 이 경우엔 B의 '간접점유 = 반환청구권'를 통해서 피아노에 대한 '소유권'이 공시되고 있는 거며, '점유 인도 -> 점유 개정'를 통해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네요.

\*Point[구체화된 사례 & 일반화된 진술 연결]

\*Point[요약, 정리의 발문 -> 이와 같이, 이처럼, 결국]

⑥ 한편 / C가 / <자신이 소유한> 가방을 / D에게 / 맡겨 두어 // 이에 대한 반환 청구권을 / 가지게 되었는데, //

<이 가방의 소유권을 / E에게 / 양도하는> 계약을 / 체결하였다고 하자.

-> '한편'을 통해서 '1) 점유개정 -> 2) 반환청구권 양도'와 같이 논의 범주

의 변화를 파악해야 합니다. 또한 결국 이러한 병렬항들에 대한 논의는 '물건이 소유권 이전 -> 공시가 필요함 -> 점유 중 간접점유를 통한 소유권 이전의 공시'에 속한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⑦ 이때 / C가 / D에게 통지하여 / 가방 주인이 바뀌었으니 / 가방을 E에게 반환하라고 / 알려 주면 //

<D가 보관 중인> 가방에 대한 반환청구권은 / C로부터 / E에게로 / 넘어간다.

⑦ 이 경우를 반환청구권 양도라고 한다.

- '2)반환청구권 양도'의 예시

C = = 양도인 = 거래 전 간접 점유자, 소유자(반환청구권)  
 D = 직접 점유자  
 E = 양수인 = 거래 후 간접 점유자, 소유자(반환청구권을 C로부터 양도 받음)

1) C가 자신이 소유한 가방을 D에게 맡겨 두어 이에 대한 반환 청구권을 갖게 됨  
 -> C는 소유자이면서, 간접 점유자가 될 것이고, D는 직접 점유자가 되겠  
 죠. 따라서 당연히 C에게는 반환 청구권이 있고, 이러한 반환 청구권을 통  
 해 C의 소유권이 공시되는 거죠.

2) C는 E에게 소유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  
 -> C의 소유권이 E에게 양도되었네요.

3) C는 D에게 통지하여 가방 주인이 바뀌었으니(=소유권이 양도되었으니)  
 가방을 E에게 반환하라고 알려줌 -> C의 반환 청구권이 E에게 넘어감  
 -> C의 간접 점유가 계약을 통해 E에게 넘어갔으므로 E는 가방에 대한 반  
 환 청구권을 가지며, 이러한 반환 청구권을 통해 E의 소유권이 공시된다는  
 거네요. 그리고 이를 '반환 청구권 양도'라고 하는 거죠. 결국 이러한 사례  
 역시 '간접 점유 -> 점유 인도'를 통해서 '소유권 이전이 공시'되는 사례 중  
 하나인 거죠. 납득.

\*Point[병렬항의 개별적 인식 + 논의 범주의 파악]  
 \*Point[구체화된 사례 & 일반화된 진술 연결]

-> 결국 해당 문단을 읽고 조직화하면 아래와 같겠쥬.

1) 물건의 소유권 양도

①-양도인 = 소유자 + ②유효한 계약 + ③소유권 이전을 공시

2) '동산'의 경우 '소유권 이전 공시(=③)'가 '점유 이전'을 통해 가능

3) '점유 인정' 중 '간접점유'를 이전하는 경우' -> '점유개정', '반환 청구권 양도' + 구체화된 사례

- 점유 개정

-> 계약을 통해 간접 점유자가 반환청구권(=소유권 이전 공시)을 갖게 됨.

- 반환 청구권 양도

-> 간접 점유자의 반환청구권이 양도 됨(=소유권 이전 공시)

가 되겠쥬. 해당 문단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동치어의 반복'을 통해 나열  
 된 문장들을 '의식적으로 연결'해가는 거였습니다. 그랬어야 '지금 이러한  
 이야기가 왜 나오는 가' 즉 논의 범주를 파악하고, 내용을 조직화할 수 있  
 었을 테니까요.

3문단 Point 정리

- ① [중심 소재 -> 세부 화제의 전환 / 동치어의 반복]
- ② 공통 서술 범주를 중심으로 한 병렬항의 비교
- ③ 구체화된 사례 & 일반화된 진술 연결 -> 조직화 및 범주화

4문단

①양도인이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양수인이 점유 인도를 받으면 소  
 유권을 취득할 수 있을까? ②점유로 공시되는 동산의 경우 양수인  
 이 충분히 주의를 했는데도 양도인이 소유자가 아님을 알지 못한  
 채 양도인과 유효한 계약을 하고, 점유 인도로 공시를 했다면 양수  
 인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③이것을 '선의취득'이라 한다. ④다만 간  
 접점유에 의한 인도 방법 중 점유개정으로는 선의취득을 하지 못  
 한다. ⑤선의취득으로 양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면 원래 소유자는  
 원하지 않아도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다.

① 양도인이 /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 양수인이 / 점유 인도를 받으면 /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을까? (=Q)

-> 해당 문장을 읽고 단순히 'Q/A이네. 개꿀'만 했다면 하수. 이러한 질문  
 이 왜 제시되고 있는지를 3문단과의 관계에서 파악해야 하고, 그랬어야 4  
 문단의 내용을 3문단의 내용과 비교해가면서 범주화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양도인이 소유자가 아니더라도'라를 발문을 읽으면서 '3  
 문단에서는 양도인이 소유자였을 때였는데?'와 같은 생각이 들었어야 하고,  
 더 근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기 위해서는 3문단을 읽으면서 '양도인 = 소  
 소유자'가 '소유권 이전의 조건'이었다는 분절해서 파악했어야 합니다.  
 즉 3문단에서는 '양도인 = 소유자' -> '점유 인도' -> '소유권 양도O'에 대  
 해서 서술했다면 4문단에서는 '양도인 != 소유자' -> '점유 인도' -> '소유  
 권 양도 가능?'에 대해서 서술하는 거죠.

② <점유로 공시되는> 동산의 경우 /

양수인이 충분히 주의를 했는데도 //

양도인이 소유자가 아님을 알지 못한 채 / 양도인과 유효한 계약을 하  
 고, // 점유 인도로 공시를 했다면 //

양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③ 이것을 '선의취득'이라 한다. (=A1)

-> ②~③은 ①에서의 Q에 대한 A가 제시되는 문장이죠. '양도인이 소유자  
 가 아님', '점유 인도로 공시', '양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한다'와 같은 동치어  
 의 반복을 통해 ①과 연결해서 읽었으면 됩니다.

1) Q : 양도인이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 양수인이 '점유 인도'를 받으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가?

2) A : 선의취득 -> 가능하다

- 선의 취득의 조건

- ① 양도인 != 소유자
- ② 양수인이 충분히 주의를 했는데도 양도인지 소유자가 아님을 알지 못함
- ③ 유효한 계약을 함
- ④ 점유 인도로 공시

-> 여기서 '양수인이 충분히 주의를 했는데도 -> 알지 못함'이 중요한 조건  
 이 되겠쥬. '양도인 != 소유자'와 관련해 새롭게 추가된 조건이니까요. 납  
 득.

④ 다만 <간접점유에 의한 인도 방법 중> 점유개정으로는 / 선의취득  
 을 / 하지 못한다. (=A2)

-> 민감하게 반응했어야 합니다. ②~③에 따르면 ①과 같은 경우에 '점유  
 인도'를 통해서 '선의취득'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 중 '간접점유에 의한 인

도 -> 점유개정으로는 불가능이라는 거네요.

해당 문장을 읽고 그냥 넘어갔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제시된 내용을 정리하고, 조직화하고 있어야 합니다. 즉 '아 점유인도로 가능한데, 그 중 '간접 점유 -> 점유개정으로는 불가능하다는 말이구나. 그 말은 '직접점유에 의한 인도'와 '간접점유에 의한 인도 중 반환청구권 양도'는 가능하다는 거구나'와 같은 반대추론을 반드시 하고 넘어가야 하고, 이게 바로 <보기> 문항을 풀기 위한 가장 중요한 단서이자 발상에 해당했죠.

1) Q : 양도인이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 양수인이 '점유 인도'를 받으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가?

2) A : 선의취득 -> 가능하다

- 선의 취득의 조건

- ① 양도인 /= 소유자
- ② 양수인이 충분히 주의를 했는데도 양도인지 소유자가 아님을 알지 못함
- ③ 유효한 계약을 함
- ④ 점유 인도로 공시
  - 직접 점유에 의한 인도 -> 가능
  - 간접 점유에 의한 인도 -> '점유개정은 불가능' '반환청구권 양도는 가능'

⑤ 선의취득으로 / 양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면 // 원래 소유자는 / 원하지 않아도 /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다.

-> 앞에서 서술된 '선의취득'으로 '양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면(=점유개정은 제외) 원래의 소유자가 원치 않더라도 소유권은 '소유자 -> 양수인'에게 넘어가게 된다는 거네요. 억울할 듯. ㅂㄷ.

\*Point[Q/A]

\*Point[보조사 반응 -> '은/는/만/도]

\*Point[주어진 정보에 대한 반대추론]

-> '점유인도 -> 간접점유 인도 -> 점유개정과 반환청구권 양도가 있음, '점유인도로 선의취득 가능 -> 그 중 점유 개정으로는 불가능'이라는 것은 결국 '점유인도 중 점유개정을 제외한 경우는 가능'이라는 뜻이 되겠죠.

해당 지문 및 <보기> 문항이 어려웠던 이유는 이러한 '발상 및 생각'을 평가원이 직접 명시적으로 서술해주지 않은 후에 <보기> 상황을 통해서 물어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당 문항이 어려웠던 학생들은 지문을 읽어 나가는 과정에서 이러한 사고 과정이 있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문항 구성은 처음이 아닙니다. 사실상 6월 모의평가에서 '개채성에 대한 논의(미토콘드리아 지문)'에서 킬러로 등장했던 <보기> 문항 역시 이와 같이 '조건'을 바탕으로 '적용 사례, 적용 불가 사례'를 물어봤습니다. 따라서 해당 문항을 틀린 학생들은 두 문항을 차분히 다시 풀어보면서 이러한 사고의 흐름을 '경험'해두고, 풀이의 발상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4문단 Point 정리

- ① [Q/A -> 세부 화제의 전환 // 논의 범주의 파악]
- ② 명시적이지 않은 문장의 연결 -> 동치어의 반복
- ③ 조건 발문 -> 민감하게 반응

5문단

① 반면에 국가가 관리하는 공적 기록인 등기·등록으로 공시 되어야 하는 물건은 아예 선의취득 대상이 아니다. ② 법물이 등록 대상으로 규정한 자동차, 항공기 등의 동산은 등록으로 공시되는 물건이고, 토지·건물과 같은 부동산은 등기로 공시 되는 물건이다. ③ 이러한 고가의 재산에 대해 선의취득을 허용하게 되면 원래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는 소유권 박탈이 일어나게 된다. ④ 이것은 거래 안전에만 치중하고 원래 소유자의 권리 보호를 경시한 것이 되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① 반면에 / [<국가가 관리하는 공적 기록인> 등기·등록으로 공시되어야 하는] 물건은 / 아예 / 선의취득 대상이 아니다.

-> '반면에'라는 접속어를 통해서 '비교' 범주를 파악하고자 하는 생각이 들었어야 합니다. 그랬어야 이 과정에서 '공시, 선의취득 대상'이라는 동치어의 반복에 반응할 수 있었을 거고,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점유로 소유권이 공시되는 물건에 대한 선의취득 여부 - 4문단' <-> '등기, 등록으로 소유권이 공시되는 물건에 대한 선의취득 여부 - 5문단'과 같은 범주를 설정하고 제시되는 정보들을 비교하면서 읽어갈 수 있었겠죠.

즉 4문단에서는 '점유로 소유권이 공시되는 물건 -> 선의취득 부분적 가능'에 대해서 서술했다면, 5문단에서는 '등기, 등록으로 소유권이 공시되는 물건 -> 선의취득이 아예 불가능'에 대해서 서술하는 거죠.

따라서 다음 문장부터는 이에 대해서 구체화할 가능성이 높고, 아마도 왜 불가능한지에 대해서 설명하겠죠. 당연히 여러분은 그러한 정보들을 4문단의 내용과 비교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Point[병렬항의 파악 -> 논의 범주 파악 // 비교]

② <법물이 등록 대상으로 규정한 자동차, 항공기 등의> 동산은 / <등록으로 공시되는> 물건이고,

토지·건물과 같은 부동산은 / <등기로 공시되는> 물건이다.

-> 어려운 내용은 없었습니다. '등록 <-> 등기'로 공시되는 물건들에 대한 사례이며, ①을 구체화하기 시작한 거죠.

따라서 이러한 사례 자체를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이러한 등록, 등기로 공시되는 물건들을 선의취득이 불가능한가'에 집중하면서 읽어가야 합니다.

③ 이러한 고가의 재산에 대해 선의취득을 허용하게 되면 // <원래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는> 소유권 박탈이 / 일어나게 된다.

④ 이것은 / 거래 안전에만 치중하고 / 원래 소유자의 권리 보호를 경시한 것이 되어 //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 '이러한 고가의 재산 = 등기, 등록으로 공시되는 물건'이 되겠죠. 이러한 물건에 선의취득을 허용하게 되면 '소유권 박탈(=P)'이라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렇겠죠. 4문단 마지막 부분을 보면 '소유자가 원치 않아도 소유권을 상실하게 될'이라고 했으니까요.

결국 이러한 고가의 재산에 대해서 '선의취득이 불가능한 것(=S)'은 '소유자에 의사에 반하는 소유권 박탈'을 막기 위해서가 되겠죠. 즉 '선의취득을 허용'하는 경우는 '거래의 안전 > 소유자의 권리 보호'에 치중한 것이고, '선의취득이 불가능'한 경우는 '거래의 안전 < 소유자의 권리 보호(고가의 재산)'에 치중한 게 되겠죠. 어렵지 않네요. 납득.

\*Point[P/S]

5문단 Point 정리

- ① [병렬항의 파악 -> 논의 범주 파악]
- ② 명시적이지 않은 문장의 연결 -> 동치어의 반복
- ③ P/S

전체 흐름 정리

1문단

-> Q:물건의 점유자와 소유자는 일치? -> A: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존재

2문단

-> '동산'의 경우 -> '점유(직접점유 + 간접점유)'를 통해 '소유권'을 공시함.

3문단

-> '양도인 = 소유자' -> '점유 인도'를 통해 -> '소유권 이전 공시'

4문단

-> '양도인 != 소유자' -> '점유 인도'를 통해 -> '소유권 이전 공시'가능  
(=선의취득 / 점유개정은 제외)

5문단

-> '등기, 등록'으로 소유권이 공시되는 '고가의 재산'들을 '선의취득'이 불가능

-> 해당 지문에서는 1문단에서 잡은 '중심 소재'를 바탕으로 '불친절하게 나열되는 정보'들을 '어떻게 의식적으로 연결 및 범주화'할 것인가가 가장 핵심이었습니다. 결국 그러한 연결은 '동치어의 반복을 통한 논의 범주에 대한 의식적 파악'이 되겠죠. 올해 수능 역시 이러한 '불친절한 흐름의 서술'이 하나쯤은 제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나머지 두 지문에 비해 해당 지문이 어려웠던 학생들은 어떤 문단, 어떤 문장에서 위와 같은 서술의 흐름을 놓쳤는지, 그렇다면 그 문제는 무엇이고, 해결책은 무엇이 될 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행동 습관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문제 해설]

27번 : ⑤

-> 해당 선지는 결국 '소유권 양도'에 대한 '조건'을 명확하게 파악했는지를 물어보는 선지입니다. 지문에 따르면 '가방의 소유권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양도자와 양수자 사이의 유효한 계약 + 소유권 이전에 대한 공시'가 핵심이었죠. 따라서 해당 선지의 내용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해당 선지가 어려웠다면 '지문의 핵심'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고, 그 문제는 3문단에서 '소유권 양도'라는 논의 범주에 대한 불명확한 인식이 될 가능성이 큼니다. 따라서 3문단을 읽으면서 '소유권 양도'라는 논의 범주를 명확하게 파악했는지, 그리고 그와 관련된 조건을 명확하게 분절해서 인식했는지 돌아볼 수 있도록 합니다.

\*Point[조건 발문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①,②

-> 두 선지는 결국 같은 것을 묻고 있는 선지죠. 즉 1문단에서 제시된 '질문'과 '대답'을 정확하게 파악했는지를 묻는 선지입니다. 1문단에 따르면 '점유'의 개념과 '소유'의 개념은 구분되는 개념이었고, 그에 따라 '점유자 = 사용하는 사람'과 '소유자 = 주인'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죠. 따라서 두 선지 모두 적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Point[Q/A]

\*Point[구체화된 사례 & 일반화된 진술의 연결]

③

-> 사실상 ④,⑤과 같은 선지죠. '동산의 소유권이 양도되려면 -> 양도자와 양수자 사이의 유효한 계약 + 점유 인도를 통한 공시'라고 했으므로 적절합니다.

④

-> 2문단에 따르면 '점유 -> 동산의 소유권을 공시하는 기능도 함'이라고 했으므로 적절합니다.

결국 ③~⑤에 해당 선지들은 '점유 -> 동산의 소유권 공시 기능' -> '소유권 양도 -> 유효한 계약 + 점유를 통한 공시'와 같은 핵심 내용을 파악했다면 같은 범주의 정보로써 수월하게 소거할 수 있는 선지였습니다.

28번 : ⑤

-> 3문단에 따르면 소유권 양도를 위해서는 '양도자와 양수자 사이의 유효한 계약 + 점유 인도를 통한 소유권 이전 공시'가 필수적인 조건이었습니 다. 따라서 '유효한 양도 계약으로 피아노의 소유자가 되려면' -> '점유에 의한 소유권 공시가 필요'라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해당 선지는 적절합니다.

해당 선지 역시 27번의 ③~⑤선지와 같은 범주의 선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선지가 어려웠다면 27번에 해당 선지들 역시 '정확한 판단'이 어려웠을 가능성이 큼니다.

①

-> 선지의 '물리적 지배'는 결국 '직접점유'가 되겠죠. 2문단의 사례에 따르면 '점유자'와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고 이 경우 '소유자'는 '반환청구권'을 가진 '간접점유자'가 된다고 했죠. 따라서 물리적 지배를 하지 않아도 간접점유자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해당 선지의 판단을 위해서는, 2문단을 읽으면서 '직접점유'와 '간접점유'의 두 개념을 명확하게 구분하면서 읽었는지,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선지의 발문을 해석하고 2문단의 사례를 통해 반례를 확인할 수 있었는지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Point[지문에 제시된 구체화된 사례를 통한 선지 판별]

-> 위와 같이 지문에 제시된 '반례'를 통한 선지 판별은 이미 기출에 수도 없이 나왔던 흐름입니다. 특히 선지의 내용이 '추상적, 일반적'일수록 이에 대한 일반화된 반례를 떠올리는 것보다, 지문에 제시된 구체적 반례를 이용하는 게 훨씬 수월한 선지 판단이 가능합니다.

ex) 2018학년도 9평 29번 - 양자역학지문

ex) 2019학년도 수능 39~41번 - 가능세계 지문

- ② -> 1~2문단에 따르면 '점유 -> 동산에 대한 소유권 공시 기능 -> 직접점유, 간접점유'라고 했죠. 따라서 간접점유는 '피아노'라는 '동산'의 소유권에 대한 공시 방법으로 볼 수 있겠죠.
  - ③,④ -> 지문에 따르면 점유자와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소유자 -> 간접점유자 -> 반환청구권을 가진 사람'라고 했죠.(=④) 따라서 점유자와 소유자가 일치한다면 '반환청구권을 지닌 간접점유자'가 있을 필요가 없겠죠.(=④) 따라서 해당 선지들은 모두 적절하지 않습니다.
- 역시나 해당 선지들 모두 1문단에서 제시된 [Q/A]를 바탕으로 핵심 정보를 묻는 선지였습니다.

29번 : ②

- ㉠ = 점유로 소유권이 공시되는 동산
- ㉡ = 등록으로 소유권이 공시되는 동산
- ㉢ = 등기로 소유권이 공시되는 부동산

-> 왜 해당 발문들에 각각 밑줄이 그어져 있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결국 '㉠ <-> ㉡,㉢'와 같은 범주로 정보들이 구분될 것이고, 그 기준은 '선의취득이 가능한가'가 되겠죠.

지문에 따르면 ㉢은 ㉠과 달리 '선의취득'이 불가능하다고 했고, 그 이유는 '고가의 재산 -> 선의취득을 인정하게 되면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는 소유권 박탈이 발생 -> '소유자의 권리 보호'가 '거래의 안전'보다 중요함'이라고 했죠. 따라서 해당 선지는 적절합니다.

\*Point[주어진 정보에 대한 반대추론]

-> 지문에서는 ㉡과 ㉢에 대해 '선의 취득을 인정'하게 되면 '거래에 안전에 만 치중하고, 원래 소유자의 권리 보호를 경시한 것'이며,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죠. 그 말은 결국 '선의취득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거래의 안전'보다 '소유자의 권리 보호'를 더 중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와 같이 지문에서 제시된 정보를 바탕으로 '반대추론'을 요구하는 선지들이 많으므로 이러한 사고의 흐름을 익혀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① -> 국가가 기록하는 공적 기록에 의해 소유권 양도가 공시되는 것은 ㉠이 아니라 ㉡,㉢에 해당하겠죠. ㉠은 '점유'에 의해서 소유권 양도가 공시되는 경우이므로 해당 선지의 내용은 절하지 않습니다.
  - ③ -> ㉡이 '점유로 공시될 수 없'는 것은 맞지만, 이것이 '물리적 지배의 대상 (=직접점유의 대상)이 아니므로'라는 인과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 ④ -> '양도인이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 '소유권의 양도'는 '선의취득'을 통해서 가능하죠. 하지만 ㉡과 ㉢은 '아예 선의취득의 대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선지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 ㉠과 ㉡,㉢의 범주 구분만 잘 했다면 수월하게 소거할 수 있는 선지라고 생각합니다.
- ⑤ -> ㉠의 경우 '양도자 = 소유자'인 경우에 '만' 한정해서 '점유개정'을 통해 '소유권 양도'가 가능하다고 했죠. 또한 ㉢의 경우에는 '점유개정'을 통해 '점유'를 통해서 소유권 공시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선지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Point[공통 서술 범주를 바탕으로 한 병렬항의 비교]

\*Point[병렬항의 비교 -> 논외 범주의 파악]

30번 : ③

<보기>

갑과 을은, 갑이 끼고 있었던 금반지의 소유권을 을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유효한 계약을 했다. 갑과 을은, 갑이 이 금반지를 보관하다가 을이 요구할 때 넘겨주기로 합의했다. 을은 소유권 양도 계약을 할 때 양도인이 소유자라고 믿었고 양도인이 소유자인지 확인하기 위해 충분히 주의했다.

-> <보기>의 '구체화된 사례'를 지문의 '일반화된 진술'과 연결해서 처리해야 합니다.

1) 갑과 을의 소유권 양도 계약

-> '간접점유에 의한 소유권 이전 공시' 중 '점유 개정'의 사례

- 갑 = 양도인 = 직접 점유자(=소유자인지 여부 미정)
- 을 = 양수인 = 간접 점유자(=반환청구권) - 제시된 조건으로 확정X
- 유효한 계약, 을이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음

-> 여기까지 읽고 나면 가장 중요한 정보가 하나 빠져있다는 것을 느껴야 합니다. 그렇죠. '갑 = 양도인'이 과연 '소유자'인지 아닌지에 대한 정보죠. 이에 따라 '점유개정'에 따른 '을'의 '소유권 공시'가 '점유개정'으로 인정될지, '선의취득 -> 점유개정'은 제외'에 따라 인정되지 않을지가 결정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까지의 선지가 모두 '갑이 소유자라면, 갑이 소유자가 아니라면과 같이 시작하는 거죠.

을은 일주일 후 병과 유효한 소유권 양도 계약을 했고, 갑에게 통지 하여 사흘 후 병에게 금반지를 넘겨주라고 알려 주었다.

2) 을과 병의 소유권 양도 계약

-> '간접점유에 의한 소유권 이전 공시' 중 '반환청구권 양도'의 사례

- 을 = 양도인 = 간접 점유자(소유자인지 여부 미정)
- 병 = 양수인 = 간접 점유자(반환청구권) - 제시된 조건으로 미정
- 유효한 계약

-> 두 번째 사례고 '반환청구권 양도'에 대한 사례죠. 반환 청구권 양도는 '양도자'가 '소유자'인지의 여부에 상관없이 '선의취득'을 통해서 소유권이 인정된다고 했죠. 다만 위에 제시된 조건에서 '병이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는가'에 대한 정보가 빠져있으므로 병이 소유권을 확보하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미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납득.

①,②

-> 갑이 금반지의 소유자라면 1)과 2)에서의 '점유개정'과 '반환청구권 양도'가 모두 인정이 되고(=㉠), 그에 따라 소유권이 '갑 -> 을 -> 병'에게 양도가 되겠죠.(=㉡) 따라서 물리적 지배는 '갑'이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병'은 '을'에게 넘겨받은 '반환청구권'을 통해 금반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 있겠죠. 적절합니다.

결국 해당 두 선지는 '양도인이 소유자인 경우 - 3문단'과 관련된 경우로 해당 사례를 판단하기를 원하는 선지였습니다.

③

-> 갑이 금반지의 소유자가 아니라면 위에서의 '소유권 양도 계약'은 '선의취득'을 통해서만 인정될 수 있겠죠. 그런데 '간접점유에 의한 소유권 이전 공시' 중에서 '점유개정'은 인정되지 않으며, '반환청구권 양도'만 인정된다고 했죠. 따라서 1)에서의 계약을 통해서도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으며, 2)의 계약을 통해서만 소유권이 이전된다고 볼 수 있겠죠.

즉 정리하면 '금반지의 소유권'은 '갑이 아닌 어떤 소유자(<보기>의 제시되지 않은 정보)로부터 '을'에게는 이전되지 않으며, '병'에게 이전된다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③ 선지에서의 '을이 가진 소유권'이라는 발문은 오답의 근거가 됩니다.

④,⑤

-> '갑'이 금반지의 소유자가 아니라면 '을'은 '점유개정'을 통해 '소유권을 양도'받지 못하므로 을은 '소유자가 아닌 양도인'이 되겠죠. 다만 '을'과 '병'이 맺은 계약은 '반환청구권 양도'이므로 '선의취득'을 통해 '병'은 '을'에게 점유인도를 받은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겠죠.(=④)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 '병'이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러한 '**점유 인도 -> 반환청구권 양도**'를 통해서 '갑과 을이 아닌 실제 금반지의 소유자'가 원치 않더라도, 이 소유자로부터 금반지의 소유권을 양도 받은 것으로 인정되겠죠.(=⑤) 따라서 두 선지 모두 적절합니다.

**\*Point**[<보기> 문제 풀이의 과정 정리]

-> 해당 문항을 풀기 위해서는 '지문'과 <보기>를 읽으면서 각각 했었어야 하는 행동 요령 및 사고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를 순서대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지문 -> '소유권 양도'와 관련해 '양도자 = 소유자', '양도자 = ~소유자'인 케이스 분류 및 이해

2) 1)을 바탕으로 <보기>의 사례를 2가지 케이스로 분류 + <보기>에서 누락된 정보에 대한 민감한 반응

3) 선지에 추가적으로 제시된 단서를 통한 케이스 분류 및 선지 판단

-> 이와 같이 해당 문항은 '지문 or <보기> or 선지' 모두에 대한 '해석'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풀 수 있는 문항이었습니다. 따라서 만약 해당 문항을 틀렸다면 구체적으로 세 부분 중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는지를 돌아볼 수 있도록 합시다.

**31번 : ①**

-> [일어나다 = 어떤 일이 생기다]이므로, 이와 가장 가까운 것은 ①이라고 볼 수 있겠죠.

②

-> [일어나다 = 소리가 나다]

③

-> [일어나다 = 약하거나 희미하던 것이 성하여지다]

④

-> [일어나다 = 어떤 마음이 생기다]

⑤

-> [일어나다 = 몸과 마음을 모아 나서다]